

제48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록

1. 일 시 : 2014. 5. 2 (금), 15:00 ~ 23:2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204호)
3. 참 석 : 김호섭 의 장, 이순일 부의장, 나상신 평의원, 이재호 평의원, 이동렬 평의원, 임문채 평의원, 오찬영 평의원, 박진훈 평의원, 김진우 평의원, 윤갑희 평의원
(불참 : 오동석 평의원, 강희진 평의원, 박윤규 평의원)

4. 의안

- 심의사항
 - 학칙개정 (안)
- 자문사항
 - 2013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
 - 201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 기타 논의사항
 -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원 임용 관련
 - 비정년 전임교원제도 운영 관련
 - 교육과 행정 기능의 분화
 - 교학 직군 운영계획

5. 주요 회의결과

가. 심의 사항

- 심의에 상정된 학칙개정(안) 중 제21조(학생정원) 대학특성화사업 신청에 따른 2016학년도 학사과정 입학정원 조정을 제외한 학칙 개정(안)은 심의함. 2016학년도 학사과정 입학 정원 조정(안)은 부결됨.
- 2016학년도 학사과정 입학정원 심의 부결 사유
 - 2016학년도 학사과정 입학정원은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등과 맞물려 있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정원을 4% 줄이는 것으로 조정하여 평의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됨.

< 간서명 란 >

의 장



- 대학평의원회는 특성화사업 지원과 정원 감축은 별개의 사안으로 정원 조정 여부가 특성화 사업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대학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원 감축을 면밀한 검토와 대학 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없이 특성화 사업에 떠밀려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함.
- 4% 정원 감축이 장·단기적으로 대학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의 질문에 대해 답변 자료를 작성·제출했으나, 국고 수익 및 정부정책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 사전 논의과정에서는 편익 대비 비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었음
- 지난 몇 년 간의 결산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 보더라도 4% 정원 감축이 그대로 시행 되면 우리 대학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단기 특수목적 사업들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사업비 집행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용도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학 정원 감축이 가져오는 경직성 대학 운영비 부족을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정원 감축이 가져오는 재정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의 마련 없이 정원 감축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본교의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대학평의원들은 정원 4%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학칙 개정을 승인할 것인가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하였음.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정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장기적인 대학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원 감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두 논의되었음. 정원 감축을 수용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설득력 있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고 또한 교내의 의견 수렴이 미비했던 점을 고려하여 학칙 개정안을 현 시점에서 승인하기는 곤란하므로, 대학본부가 대학구성원들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상정하면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음. 그러나 대학평의원회가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출된 학칙 개정안에 대해 승인 여부를 묻는 표결을 실시한 결과, 학칙 개정안 승인은 찬성 4표 대 반대 5표로 부결되었음.
- 특성화사업계획서의 제출과 상관없이 정원감축 여부는 6월 중에 결정하여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는 기획처장의 답변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 재검토하고 현명한 의사 결정을 할 시간은 남아 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총장과 만나, 이번 평의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들을 전달하고 대학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등을 통해 학생정원 감축이 대학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된 새로운 학칙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대학평의원회에 재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함.

< 간서명 란 >

의 장



[주요 개정내용]

- 제4조(기구) : 법무대학원 폐지에 따른 기구표 조정,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를 임상시험센터에 통합, 국제교육센터 신설
- 제8조(대학원) : 법무대학원 폐지에 따른 기구표 법무대학원 폐지에 따른 기구표 조정/법학박사를 법학전문박사로 명칭변경/특수대학원설치학과에서 법무대학원 삭제/교육대학원 융합인재교육 신설
- 제11조(의료원) :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를 임상시험센터에 통합
- 제21조(학생정원) : 법학박사를 법학전문박사로 명칭변경/법무대학원 폐지에 따라 정원표에서 삭제/201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정원 조정/2015학년도 의학학제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대학특성화사업신청에 따른 2016학년도 학사과정 입학정원 조정
- 제22조(신입학) : 법학전문박사과정 입학자격 제한 규정 명시
- 제23조의2(계약학과) :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신설
- 제37조(수업연한)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과정 수업연한 6개월 단축 근거 명시
-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 법학전문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명시/법무대학원 폐지에 따라 대학원과정 이수학점에서 삭제

* 상세 내용은 2차, 3차, 4차 교무회의 결과 참조

나. 자문사항

○ 2013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

1) 주요 보고사항

- 행정부원장이 2013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 (안)을 설명함.
- 부속병원의 임대 사업도 법인의 수익사업임을 설명하고 올해는 임대 수익이 늘어나서 본교 지원 금액이 다소 늘었고 본교 지원금은 법정부담금 규모 수준에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설명함.
- 장례식장 건립 및 수익배분과 관련하여 법인에서 투자하여 장례식장을 건립하고 자산 보전 및 감가상각 비용 등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금을 의료원과 학교로 배분 예정이라고 보고함. 배분 내용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나 의료원의 기득권을 고려하여 현재 수익만큼은 의료원으로, 추가적인 수익은 학교와 배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함. 앞으로 규모를 많이 키워 수익을 늘리려고 노력할 것임을 설명함.

< 간서명 란 >

의 장



2) 주요 자문 사항

- 부속병원의 법인전출금을 학교 법정부담금으로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부속병원에서 본교로 지원이 된다는 사실 및 지원 금액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지원금액의 결정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을 자문함.

○ 201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1) 주요 보고사항

- 총무처장이 201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안)을 설명함.

2) 주요 자문 사항

- 펀드 투자와 관련된 선물환 계약의 손실이 확정되고 지금까지 완료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고 다음 대학평의원회에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잘못된 관행과 부적절한 권한 행사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음. 구상권 행사나 보직해임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자문함.
- 특수대학원 운영 상태와 오버헤드 비율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함. 최근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신입생 유치가 어려워지는 등 특수대학원 운영이 침체되어 대학재정에 대한 기여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우려되는 바임. 현재의 오버헤드 비율은 오래 전에 책정된 것으로, 일부 조정을 거친 것으로 알지만 전반적인 분석과 기본 틀의 조정은 이루어진 바 없음. 각 과정의 출범초기에 정당화되던 투자비용 수요가 현격히 줄었고 대학 차원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학교 전체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이를 통해 우리 대학 전체와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과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거시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자문함.

다. 기타 논의 사항

○ 공공정책대학원 겸임·초빙 교원 임용 관련

- 47차 평의원회에서 지적된 공공정책대학원 특별교원 임용 문제에 대한 공공정책대학원장의 소명이 있었고, 이를 통해 초빙교원 1인의 임용은

< 간서명 란 >

의 장



대학 본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확인 됨. 겸임교수 임용에 대해서도 공공정책대학원장의 소명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초빙·겸임교수 임용의 당위성과 학칙 준수에 대한 소명이 설득력이 없으며, 위법 및 학칙 위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결여는 심히 우려되는 바임. 특히 기부금을 통한 초빙교원 인건비 지급은 사안의 성격상 추가 조사를 통한 위법성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됨.

- 공공정책대학원의 초빙·겸임교원 임용과 인건비 지급 건은 실정법 저촉과 우리 대학의 학칙 위반 소지가 큼. 그리고 부적절한 임용으로 지적된 특임교수들이 모두 전·현직 정치인이거나 정치지망생이어서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함. 이런 맥락에서 47차 평의회 이후, 부당 임용으로 지적된 2인의 겸임교원이 의원면직하고, 학교가 초빙교원 인건비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특임교원 임용에 대한 범 대학 차원의 주의를 환기시킨 점은 다행스러운 일임.
- 정치인 및 정치지망생 초빙·겸임교원에 대한 지정기부금을 통한 인건비 지급과 부적절한 임용 문제는 우리 대학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조장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대내·외적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교원인사로 높은 평가를 받아 온 아주대의 전통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이에 더해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보직해임이나 징계 등을 통해 책임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총장에게 강력히 건의기로 함.

○ 비정년 전임교원제도 운영 관련

- 비정년 전임교원 제도는 특임교원 제도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큼. 현재 규정이나 규칙도 정비가 필요하며, 규정이나 규칙에 맞지 않는다고 개별 계약을 통해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앞으로도 계속 제도를 운영하려면 신중하게 처리하고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함.

○ 교육과 행정 기능의 분화

- 어학교육원 원장이 사회진출센터에서 진로설정 및 어학능력개발 과목과 방학 중 토익 과목을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과 행정 기능의 분화에 대해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건을 상정함.
- 교무처장의 주관 하에 기초교육대학과 어학교육원에서 본교의 어학 교육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함. 또 교육 관련 프로그램 구매 등을 실시

< 간서명 란 >

의 장



할 경우 구매위원회에 관련 교수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함.

- 교무처장은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개발 수업의 설계 내용은 외국대학의 University101 프로그램 등을 참조하여 교양교육 과정 개편 시 재검토 예정임을 보고함.

○ 교학 직군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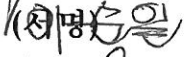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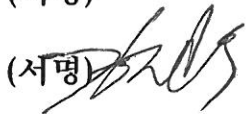

- 회의 자료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교학직군 신설이 원래의 취지와 달리 단과대학의 교학과 정규 직원을 비정규직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함. 그러나 이공계의 실험 기자재 보수 및 유지가 전문성과 연속성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이전의 '기사' 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조교를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기획처장은 교학직군 도입은 각 단과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서히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조교보다 급여를 좀 더 높게 책정할 것이고, 또한 최근 얘기되는 정규 직원 전면 철수는 아니며 단과대의 특성에 따라 운영예정임을 보고함.
- 장기적으로 정규직원을 뽑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 교학직군은 전문 직종으로 발전하여 분명한 역할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자문함.
- 교학직군은 단과대학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정규직과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 비슷한 일을 하면서 임금 차이가 심해지는 등의 문제도 나타날 것으로 보임. 이런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처리할 것을 자문함.

< 간서명 란 >

의 장



2014년 5월 2일

의 장	김호섭	(서명) 
부의장	이순일	(서명) 
평의원	나상신	(서명) 
평의원	오동석	(서명)
평의원	이재호	(서명) 
평의원	이동렬	(서명) 
평의원	임문채	(서명) 
평의원	오찬영	(서명) 
평의원	박진훈	(서명) 
평의원	강희진	(서명)
평의원	김진우	(서명) 
평의원	박윤규	(서명)
평의원	윤갑희	(서명) 
간 사	김승권	(서명)